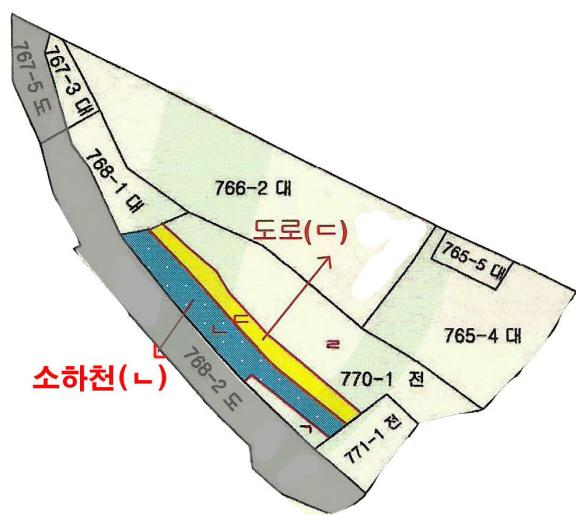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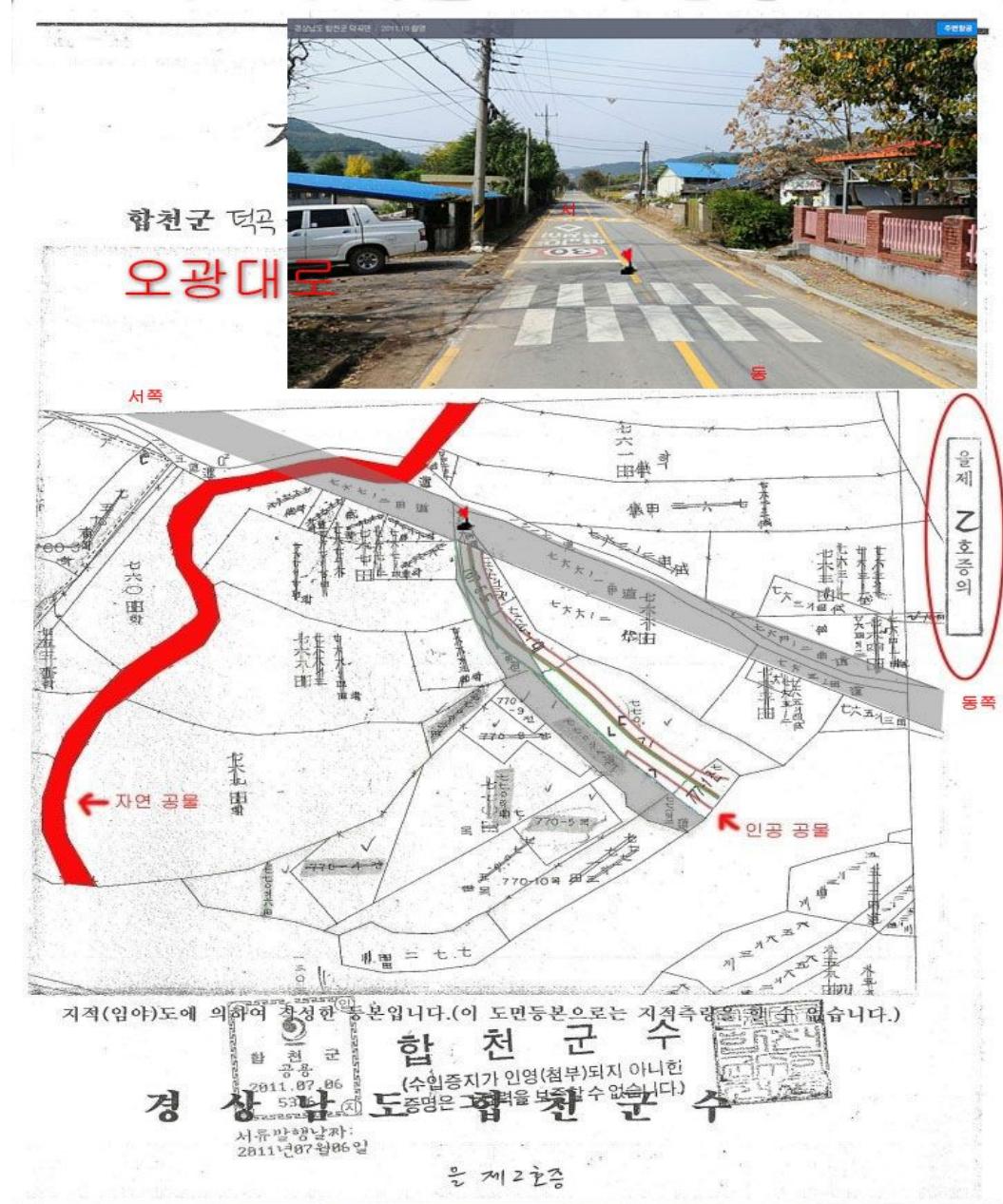
[첨부 서류]

입증 자료 설명서

규칙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재설(再說)하여 설명이 쉽도록 사건을 분석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 드립니다.



1. 상고이유서 제1페이지 사건 발생 개요를 그림으로 설명 드립니다.



위 그림은 갑 제32호증(을 제2호증)이며, 적색표시가 원 구거였으며 2000년경 농지 개간(開墾)으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회색 표시는 도로명칭 오광대로와 소송지상의 지적소로입니다. 깃발자리가 대로개설로 현재의 하천 개설을 위한 1986년경 시설된 교각의 위치입니다.

주장의 요지 : 구·현 지적도와 현 상황은 거의 일치합니다만 유독 소송지 일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부합할 이유 있습니다.

2. 상고이유서 2페이지에 따른 무단점유 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① 갑 제7호증의 2 (1986. 7. 13. 촬영) 소하천(구거) 생성 당시의 모습입니다.



㉡ 소유권 취득일 2007. 2. 20. 이후 갑 제9호증 (2007. 3. 18. 촬영) 아스팔트 포장 하기 전 콘크리트와 도로에 수도 공사를 한 모습입니다.



㉢ 현재, 멀리 경로당(마을회관)의 건립과 콘크리트 위에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2009. 3. 26)

원 수도배관 위치와 다른
곳에 수도 보수공사를 위해
절개만 한 모습입니다.



콘크리트 위에 덧씌운 아스팔트 포장



3. 인도해야 할 이유 (소하천 정비 취소)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 병행 거의
이사람들이 소유권을 증명해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 당초 사업장 : 대동 구가 정비공사

왜 이런 도장을 받나요?

□ 변경 사업장 : 구가 일부 풍자

（본래는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표기되었지만,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장지 1459 번지 배수도공사 및 가드레일 설치

그것도 한사람 글씨체로

장지 523-1번지 배수도 설치

난 이런 공문은 처음봅니다.

장지 898 번지 도로 확장

대동지구 정주기반 확충사업 포기각서

장지 647-0 배수도 설치

- 대동 구가정비공사 사업 포기에 동의합니다 -

성명	직인	성명	직인
유영식	여자순		
서홍수	김주도		
유인숙	백동숙		
김치우	이덕수		
제원호	최민경		
김근상	오고이		
방병영	변희숙		
조재선	김봉남		
이갑선	서병천		
이소연	전래온		
정명남	과태명		
마정희	유승자		
김복순	박간장		
장래식	최미화		
최발호	최성경		

이 둘내 글씨체는 다른 비슷하군요.

작성 시기가 다른데 순서가

성명	직인	성명	직인
유영식	장주도		
서홍수	최한영		
유인숙	마주희		
김치우			
제원호			
김근상			
방병영			
조재선			
이갑선			
이소연			
정명남			
마정희			
김복순			
장래식			
최발호			
유승자			
박간장			
최미화			
최성경			

111년도	대동 소하천 정비 및 도로 확포장
설계예산서	
◎ 공사개요	
(1) 일정(3.0x1.3m)설치 L=119m	
(2) 일정(3.0x1.7m)설치 L=10m	
총 공사비 : 원금 이억칠백오십만원 (₩ 207,500,000)	
도급비 총액 : 일억칠백일십만원 (₩ 119,240,000)	
관공자체비 : 일억칠백이십육만원 (₩ 86,260,000)	

4. 을 제7호증의 부실공사

이빨 빠진 석축



고인 물(모기 생산)



5. 낭비성 공사



너무 구덩이를 많이 파는거 아닌가요? 이건 낭비입니다. 그기에도 안한 공사비 까지 착복



3.5mm 배관 매설을 하는데 위 바가지 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꺼 같으—면 이렇게 안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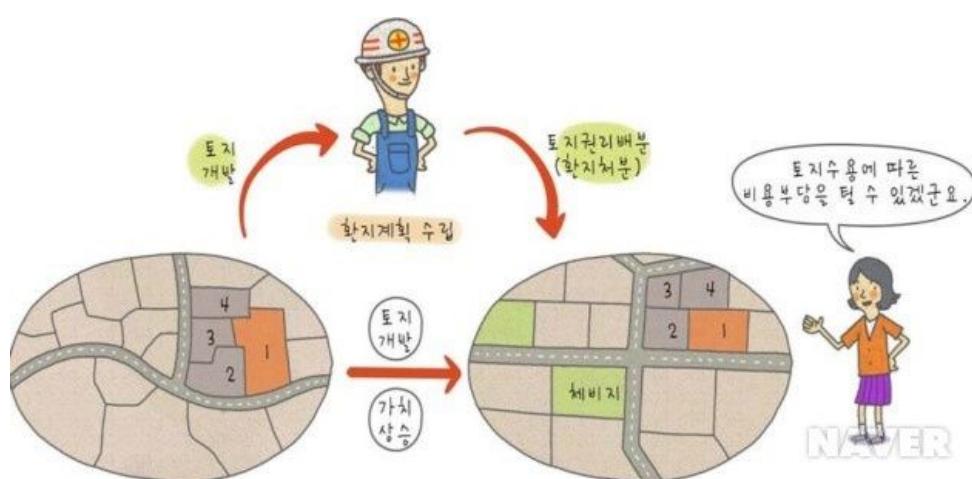
제일 작은 바가지 쓰아,
매립할 콘크리트도 적어 환경적이지요.

6. 적절한 공의사업



본인이 합천군수라면,

복개천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화살표 방향으로 비용 면에서나 실익으로 현재
도 앞으로도 폐교인 운동장으로 지방하천과 연결하여 유수의 흐름을 직선화하여
개인에게 폐도를 환지사업으로 정리를 하면 군 제정에도 보탬이 될 텐데 말입니다.



7. 미사용 양식들

- [+] [별표] 소하천 접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제11조 관련) 
- [+] [서식 1]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 [서식 2]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 
- [서식 2의2] 삭제 <2012.3.5>
- [+] [서식 3]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 [서식 4] 소하천 실태조사서 
- [+] [서식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 
- [+] [서식 6]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 [서식 7]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 [서식 8]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 [서식 9] 소하천 현황대장 
- [+] [서식 10] 소하천 허가대장 
- [+] [서식 11]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접용·사용) 허가신청서 
- [+] [서식 12]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접용·사용) 허가 공고 
- [+] [서식 13] 준공검사신청서 
- [+] [서식 14] 준공검사증 
- [+] [서식 15] 소하천 접용·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 [+] [서식 16] 소하천 접용·사용신고서 
- [+] [서식 17]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 [서식 18] 소하천 공사(소하천의 접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신청서 
- [+] [서식 19]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 [+] [서식 20] 폐천부지등(교환, 유상·양여)신청서 
- [+] [서식 21]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결과 통지서 

반사적 이득을 보는 불법 건축물(768-2 도로)은 나두고, 이런 유형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들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야할 이유나 법이 있나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함이 당연하지요.